

「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」 2차 변경 계획 공고

부산광역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·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‘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’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. 7. 27.

부산광역시장

[주요 변경 사항] ※ 2026. 8. 1.자부터 적용

□ 연장 요건 중 난임치료 시술 기간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확대

○ (현행) 지원 기간 내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 연장

⇒ (변경) 지원 기간 내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 연장

1. 사업개요

- ☐ **사 업 명:**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- ☐ **사업대상:**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(예비) 신혼부부
- ☐ **신청기간:** 2026. 7. 1. ~ 11. 30. ※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중 마감될 수 있음
- ☐ **대출실행기간:** 2026. 7. 29. ~ 12. 31. ※ 대출 심사 기간 약 1개월 소요
- ☐ **융자지원**
 - 취급은행: 부산은행
 - 최제한도: 최대 2억 원 ▷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

※ 단,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며,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출심사 및 자격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☐ **대출용도:** 임차보증금(전세 보증금) ※ 매매는 지원 대상 아님
- ☐ **대출기간:**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
- ☐ **상환방식:** 만기 일시 상환방식

2. 자격요건

- ☐ **신청 대상자** ※ 부부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
 - 대출신청일¹⁾로부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²⁾ 신혼부부 ※ 이하 “부부” 라 통칭함
 - 1)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 (정확한 보증서 발급 신청일은 서류 제출 완료 후 은행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)
 - 2)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증빙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를 제출하고, 대출실행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 - 대출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
 - 대출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
 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
 - ※ 모바일 banking 앱 신청 시 계약체결일을 입력해야 하므로,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
 - ※ 갱신 계약도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묵시적 갱신 계약은 인정 불가
 - 아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**제외 대상자** ※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 -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※ 생애 1회 참여 가능
 -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공급·운영·재정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거주자³⁾ 및 주거지원사업(대출·월세 지원 등)의 수혜자⁴⁾
 - 3) 행복주택, 영구임대·국민임대·전세임대주택, 드림아파트, 사회주택, LH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
 - 4)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(버팀목 등), 부산시 및 타시·도 광역·기초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(대출·이자·월세 지원 등) 등
- ※ 단, 신청 당시 상기 주거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대출실행일 전까지 해당 지원이 종료되거나 관련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(세부 사항은 FAQ 2-14~17 참고)

□ 대상주택

-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 - ※ 공공임대주택,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, 금융기관 제규정에 미충족되는 건물*은 지원 불가
 - *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 기간(3개월) 미충족 시 대출 불가

3. 대출 안내

□ 대출신청시기

- 신규임차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갱신: 주민등록 전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, 갱신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
 - ※ 대출실행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서류 제출
 - ※ HF 보증서 및 은행 제출 서류 유효기간(1개월) 등을 고려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2개월 이내 신청 권장(조기 신청 시 제출서류 재제출 필요)
 - ※ 대환(기존 대출 등 전환), 계약갱신의 경우 사업 신청 전 은행 사전 문의

□ 대출한도

- 최대 2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※ 단,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며,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대출금리: 연 3.5%

-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▷ 시 2.0%, 자부담 1.5%
-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▷ 시 1.8%, 자부담 1.7%

□ 보증방식: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
※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(신용보증금액의 0.02%)는 신청인 부담

□ 본인 부담금리: 소득 기준별 연 1.5%, 연 1.7%

□ 이자 지원기간: 기본 2년, 최대 10년

- 지원 기간 중 임신(유산 포함) 한 경우 1회(2년)씩 연장 가능
- 지원 기간 중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1회(2년)씩 연장 가능
- 지원 기간 중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경우 1회(2년)에 한하여 연장 가능

※ 임신(유산 포함)은 의사 소견서 등 ‘임신 확인일’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‘임신 확인일’이 해당 지원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

※ 임신 또는 유산에 따른 연장은 지원기간 중 발생한 사실 1회를 기준으로 2년을 연장하며, 동일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로 중복하여 연장할 수 없음

※ 출산에 따른 연장은 자녀 1명당 1회 인정하며, 임신으로 이미 연장받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연장하지 않음

※ 임신·유산·출산에 따른 연장은 각 지원기간 중 새로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, 총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난임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하며, 난임을 사유로 한 연장은 전체 지원기간 중 1회만 가능함

※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하며,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종료함

□ 대출연장

- 신청대상: 해당 사업 대출 만기 도래 예정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
- ① 지원 기간 중 임신(유산 포함) 또는 출산한 경우
- ② 지원 기간 중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경우 ※ 난임을 사유로 한 연장은 전체 지원기간 중 1회만 가능함
- 대출 연장기간: 2년 이내(최초 대출일부터 10년 이내)
 - ※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
- 대출금리: 최초 본인이 대출받은 금리 적용
 - ※ 신규 대출 시점에 따라 적용 금리 상이
- 신청시기: 임대차계약 만료일(대출만기일)로부터 20영업일 전
- 신청방법: 부산은행 영업점(기존 대출 관리점) 방문 신청
 - ※ 연장 대상자는 부산은행 영업점(기존 대출관리점)에서 개인별 필요서류 사전 확인

<유의사항>

- ※ 연장 시 대출금 증액 및 추가 대출은 불가함
- ※ 연 소득은 연장 심사 시 적용하지 않음
- ※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은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, 연장 심사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
- ※ 위 사항을 제외한 자격요건은 연장 시에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
(세부 사항은 FAQ 3-11~23 참고)

- **이자 지원 중단 사유** ※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
 -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
 - 예비 신혼부부가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, 현재 이용 중인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경우
 -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(부부 합산 기준)
 - 부산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
 - 생계·주거급여 등 수급, 공공임대주택 입주, 공공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 받은 경우
 - ※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지연 통보 시 이자 지원금·대출금 즉시 회수, 대출만기 연장 제한,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4. 신청 안내

□ 신청 절차

단 계	주 체	단계별 내용
① 임대차계약 후 사전 상담	신청자	1) 임대차계약 체결 2) 필요시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본인 대출 신청 가능 금액 등 사전 상담
↓	↓	↓
② 사업 신청	신청자	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 1) 대출 실행 예정일은 사업 신청일 기준 20영업일 부터 선택 가능 2) 방문 희망 영업점 선택 ※ 사업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만 가능 ※ 20영업일 이내 영업점 미방문 시 사업 신청은 자동 취소됨 ※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 마감 될 수 있음
↓	↓	↓
③ 대출 서류 제출	신청자	영업점 방문하여 대출 서류 제출 ※ 제출 서류 붙임 참고
↓	↓	↓
④ 대출 심사	부산은행	대출 승인 여부 심사(약 1개월 내외 소요)
↓	↓	↓
⑤ 전세자금보증	한국주택 금융공사	은행이 검토한 대출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세 자금보증 확정
↓	↓	↓
⑥ 대출실행	부산은행	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
↓	↓	↓
⑦ 이차보전	부산시	부산시에서 부산은행으로 이차보전 금액 지급

※ 대출 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음.

☐ **신청기간:** 2026. 7. 1. ~ 11. 30.

- ※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중이라도 마감될 수 있음
- ※ 대출 실행 예정일은 사업 신청일 기준 20영업일부터 선택 가능
- ※ 20영업일 이내 영업점 미방문 시 사업 신청은 자동 취소됨
- ※ HF 보증서 및 대출 제출 서류 유효기간(1개월) 등을 고려할 때 대출실행 예정일 2개월 이내 신청 권장

☐ **대출실행기간:** 2026. 7. 29. ~ 12. 31.

☐ **연간 일정** ※ 대출 신청은 당해 연도 11월까지, 대출 실행은 당해 연도 2월부터 가능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대출신청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×
대출실행	×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☐ **신청방법**

-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을 통해 사업 신청 후 영업점 방문
※ 접속경로: 대출 → 대출신청관리 → 동의·약정·예약 →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

☐ **대출서류 제출**

- 제출시기: 대출실행일(잔금일) 20영업일(약 1개월) 이전 제출 완료
- 신청서류: 붙임 [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 서류 목록] 참고

☐ **신청취소**

-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사업 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20영업일 이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
※ 원활한 사업 운영과 다른 신청자의 신청 기회 보장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 적용

☐ **문 의 처:** 부산은행 콜센터(☎1588-6200), 부산은행 영업점

6. 기타[유의] 사항

- 본 사업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을 통해 신청받으며, 허위·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 바랍니다.
-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, 대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①공사 및 은행 내규에 부적합, ②대출한도 미산출, ③자격요건(공고문 2번) 및 ④대출 신청 시기(공고문 3번)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신청 시 대출 실행 예정일은 신청일 기준 20영업일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20영업일 이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하며, 신청 후 변경 불가합니다. ※ 부부 모두 신청 불가(부부 중 임차인 1명만 신청)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그 외 기타 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콜센터(☎1588-6200)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.

붙임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 서류 목록 1부. 끝.

【붙임】

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 서류 목록

<모든 서류는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만 가능>

-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
-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- ③ 구 임대차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)
- ④ 계약금(임대보증금의 5% 이상)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
※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
-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
- ⑥ 주민등록등본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⑥-1 주민등록초본(본인, 배우자 각각)
- ⑦ 재직증명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각 1부(근로자인 경우)
⑦-1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각 1부(자영업자인 경우)
-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(근로자)
⑧-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,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1부(근로자 외)
⑧-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 없음, 국세청발급분) 각 1부
※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, 배우자 모두 제출
- ⑨ 가족관계증명서(본인, 배우자 각 1부씩)
※ 특정 아닌 '일반' 또는 '상세' 발급분
-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(청첩장, 결혼식장 예약 서류)
- ⑪ 비수급자 확인서(거주지 읍면동 발급)
※ 임차인 기준으로 발급하나,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징구
-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(필요시)
-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- ⑭ 대출실행 후 전입 주민등록등본, 전입세대확인서
*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.